

**신구조문대비표**  
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」

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5781호, 2014.11.28., 타법개정]	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6893호, 2016.1.12., 일부개정]
<p><b>제5조(실태조사 등)</b>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임금 수준</p> <p>5. ~ 7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5조(실태조사 등)</b> ①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5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1조(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)</b>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(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말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최근 10년간 국제건축가협회(UIA)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11조(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)</b> ①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국제건축가협회(UIA)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3조(진흥시설의 지정 등)</b>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</p> <p>1.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에 5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(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)가 입주할 것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<b>제13조(진흥시설의 지정 등)</b> ①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1. - - - - -</p> <p>- - - - - 건축서비스사업자- - - - 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20조(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)</b> ①·②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20조(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)</b>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할 때에 해당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해당 공공기관의 처리방향을 공공건축 사업의 착공 전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p>